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2.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5조에 따라 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모집학년도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시부정 방지
2. 입시관리를 감시하여 공정성 확보
3. 입시관리 주요과정 입회
 - 가. 원서접수
 - 나. 전산처리과정
 - 다.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 라. 합격자 사정
 - 마. 기타 입시부정 방지에 필요한 사항의 관리감독
4. 입시관련 자체감사 실시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과 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및 주관부서) 위원회는 입학주무 부서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심의된 것으로 본다.